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의안 번호	18615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송언석 의원 등 107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의 해임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취임 이후 우리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민적 염원인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고집해 왔음.

특히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한 독단적 발언으로 대외 기밀에 준하는 안보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허위 사실로 국회를 기만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위를 상실하기에 이르렀음.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보를 반복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잘못된 통일정책의 틀을 바로
잡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동영 통일부장
관의 해임을 강력히 건의함.

1. 국가 기밀 유출· 및 허위 해명으로 인한 국익훼손 및 국가 신뢰 실추

정동영 장관은 2026년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존
에 정부가 공식 확인한 영변·강선 외에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우
라늄 고농축 시설'이라는 민감한 안보 정보를 무단 공개하였음.
이 발언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명백히 일탈한 것임.

이후 미국 측이 발언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외교·안보 참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스스로 안보의

근간을 허문 자충수임.

더욱이 정동영 장관은 발언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CSIS 보고서를 인용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로 밝혀져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관과 전문가의 권위를 도용해 거짓 해명을 늘어놓다가 당사자에게 ‘공개 반박’ 당하는 참담한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국회와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동영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표명하기는커녕, 비판 여론을 ‘한미관계 위기설 유포’로 호도하는 등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여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상실하였음.

2.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방적·굴종적 대북 정책 추진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편향된 대북관에 매몰되어, 관계 부처 및 국가안보실과 충분한 조율도 없이 다음과 같은 일방적이

고 굴종적인 친북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였음.

① 원칙 없는 군사합의 복원: 2026년 2월 1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요구가 있는 지 닷새 만에 북한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일방 발표하였음.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과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북측 요구에 굴종하여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제약하려는 시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까지 있는 이 조치는 대북 억지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행위임.

② 국가 정체성 훼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보조를 맞추는 '평화적 두 국가'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복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제4조(평화통일 조항)가 정한 통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관이 앞장서 이에 반하는 위헌적 주장을 반복한 것은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망각한 것임.

③ 시대착오적인 대북 경험 재개 주장: 장관은 20년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 건립 등 남북경협을 주도한 경험을 근거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경제협력 재개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으며,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임.

정동영 장관의 일방적인 대북 경협 재개 주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동맹국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④ 남북교류협력법을 형해화하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폐지: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7월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사실상 모두 승인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기간 승인된 124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거절된 개인 또는 단체가 다시 신고한 사례였으며, 접촉 내용 중에는 북한 사무소 개설 등 단순한 친선 교류로 보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반하는 경

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처리 지침이 마련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주장하며 법 제정 취지와 개정 과정의 역사적 맥락을 사실상 부정하였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한 결정임.

⑤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 방기: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통일부의 국회 공문 제출을 거부하고, 북한인권 증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북한인권조사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등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를 이어왔음.

또한 정동영 장관은 올해 3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북한인권 거론을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반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

을 초래하였음.

3.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독단적 월권행위 및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약화

통일부 장관이 정부내 조율된 입장도 없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정당한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주도하며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유엔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임.

또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개 언급하며 우리 군의 연합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음. 이는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방 영역에 독단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안보 컨트롤타워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음.

4. 독단적 발언 남발에 따른 부처 간 이견 노출 및 안보 컨트롤타워 무력화

정동영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국방부 및 국가안보실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북한 HEU 2,000kg 축적 추정',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 평가 등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공개 유포하였음. 이러한 독단적 태도는 정부 내 심각한 혼선과 부처 간 이견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키고,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였음.

더 나아가 정동영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이러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통령과) 정확하게 같은 의견", "대통령의 입장이 내 입장과 같다"는 취지로 반복 발언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임의로 대변·독점하였고, 나아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아직 정부 내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구상을 마치 정부의 확정된 입장인 것처럼 선전하였음.

이러한 태도는 장관 개인의 견해를 대통령과 국가의 입장에 혼재시키는 것으로서, 심각하고 오만한 월권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정부의 대북·대미 협상 여지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적 발언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앞서나간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 장관은 안보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음. 이는 단순한 소통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관리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킨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자질 문제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심각한 안보 기밀 유출, 허위 해명으로 인한 의회와 국제사회 기만, 위헌적 대북 정책 주창, 안보 주권 침해, 독단적 월권행위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 만큼 통일부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품위조차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음. 정동영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스스로 허물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며, 우리 국민을 불안과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음.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 및 「국회법」 제112조에 의거하여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의 해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